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 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6. 3. 28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2(목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6.22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<별표1>을 일부 개정하는 바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,000원의 수수료 징수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찰건당 수백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진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하였던 것을 폐지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은

○ 전자입찰제 도입 및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수수료가 없으나,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왔고

○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서도 이 규정에 대한 폐지권고와 감사원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수료 징수규정 등이 부정하다는 지적과 주의지시에 따라 평창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것임

다. 검토결과

○ 이로 인해 평창군의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예산 8,405만원은 감액되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업체의 80% 이상이 우리군 관내 영세업체인 상황을 감안 지역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,

○ 강원도내 타지방자치단체도 상반기중 이 규정을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: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9

제출년월일 : 2006. 3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지자체발주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없애고자함.

2. 주요골자

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<별표1>을 일부개정하는 바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,000원의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나. 입법예고 : '06. 2.15 ~ 3. 6 실시결과 제출의견 없음
다. 예산조치 : 추경시 2006년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예산에 계상된 84,050천원은 정산 후 삭감조치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마. 합의 및 협의 : 해당사항 없음.

평창군조례 제　　호

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(증명)란의 12-1호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<별표1>				<별표1>			
구 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	구분	기준	수수료액	비고
12-1. 입찰참가신청				12-1. <삭제>			
입찰참가신청서	1건	10,000					

- 관 계 법 령 발 췌 -

○ 지방자치법

제128조 [수수료]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30조[사용료의 징수조례 등]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▣ 감사원처분요구사항 통보내용

「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」에 대한 감사실시('04.10.18 - '04.11.26)

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,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후 "**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**" 구축으로 입찰관련 **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**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부지방자치단체가 입찰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음.

▣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-310(2004. 7. 7)호의 내용

현재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지자체발주공사 입찰참가자에게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점에서 **형평성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**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개선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. 따라서 시군에서는 입찰수수료징수 폐지 개선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